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55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서왕진·김준형·황운하

차규근・조 국・이해민

김재원 • 박은정 • 신장식

강경숙 · 김선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 사·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 등의 다수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권침해 피해 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정책 수립 등의효과적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 태조사의 범위에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

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제3항에"를 "인권침해 실태 및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과 신분보장) ① ~ ③ (생	과 신분보장) ① ~ ③ (현행과		
략)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	4		
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u>제3항</u>	<u>인권</u>		
<u>에</u>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	<u>침해 실태 및 제3항에</u>		
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			
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u><신 설></u>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예		
	<u>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u>		
	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신 설></u>	⑦ 제4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		
	<u>다.</u>		